

화성시문화재단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화성,
문화로
공간을
잇는다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지원사업 공고(안)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일상적인 생활문화활동을 확산하고 넓은 지리적 범위로 인해 공공문화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합니다. 이에 지역 내 다양한 공간을 새로운 장르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하니 지역 내 공간소유자 및 문화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 7. 5.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 사업기간: 2023. 7. ~ 12. (약6개월)
- 지원대상: 화성시 소재 공간운영자 및 문화활동가
 - ※ 단, 문화활동가는 공간운영자와 협업하여 지원 가능
- 사업목적: 다양한 공간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화성시 소재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간운영자 및 문화활동가들이 문화예술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2. 공모개요

- 공모명: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 공모기간: 2023. 7. 5.(수) ~ 7. 19.(수)
- 공모대상: 화성시 소재 공간운영자 및 문화활동가
 - 단, 문화활동가는 공간운영자와 협업하여 지원 가능
- 주요내용
 - 화성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잇다 DAY를 포함 최소 1회 이상)
 -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 사전 설명회: 2023. 7. 11.(화) 15:00 태안도서관 4층 강당

3. 지원내용 : 화성시 소재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운영

구분	세부내용
선정규모	- 총 10개소 ※ 권역별 문화공간 선정 지향 예정
지원비용	- 문화공간별 각 5,000천원
지원내용	- 문화예술행사 기획비(최대 30만원) - 회계 검토비용 필수 책정 -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임차비 등 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액 ※ 예산편성 기준 공모안내서 및 사업지원서 붙임문서 참조
지원조건	- 상주직원 인건비, 공간대관료 지원 불가 - 공간으로 재유입되는 행사경비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서 상 2023년 12월까지 운영 및 사용 가능한 공간 소유자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사업체 ※ 소재지 증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복 수혜 불가 기준]

-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은 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복 수혜 불가
- 본 사업 내 동일공간의 콘텐츠 구분을 통한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

4. 일정

■ 주요일정

공 고	사전설명회	접 수	심의	결과발표	운영기간
2023. 7. 5.(수) ~ 7. 19.(수)	▶ 2023. 7. 11.(화)	▶ 2023. 7. 12.(수) ~ 7. 19.(수)	▶ 2023. 7. 21.(금)	▶ 2023. 7. 24.(월)	▶ 2023. 8.~12.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접수

- 공모기간: 2023. 7. 5.(수) ~ 7. 19.(수)
- 접수기간: 2023. 7. 12.(수) ~ 7. 1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nykim@hcf.or.kr)
- 제출서류
 - ①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지원신청서 1부.
 - ② 사업계획서 1부.
 - ③ 예산 사용계획서 1부.
 - ④ 공간 관련 증명서 1부.
 -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⑥ 지원신청자 확인서

※ 지정양식 외 별도 양식 제출 시 심의 제외 / 파일명: <2023년도 문화공간 활성화 _지원신청서(지원공간명)>

5. 심 의

- 일 정: 2023. 7. 21.(금) 예정
- 장 소: 재단 운영시설
- 심의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100)
사업이해도	사업 취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타당성	20
	사업목적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	20
사업적절성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과의 밀접성	15
	예산편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사업수행능력	프로그램 운영역량의 충분성(홍보 노력, 참여도 등)	15
지속가능성	공간 활용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유지·발전 가능성	15
가점사항	서남부 공간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	3

- 심의방식
 - 총점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 총점 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절 차	심의지표	담 당
행정확인	제출 기한확인, 필수 제출자료 등 확인	해당 부서
인터뷰 심의	사업 적절성, 예산 타당성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실현가능성 등	관련 전문가

※ 예정된 인터뷰 심의 참석 필수

- 결과발표: 2023. 7. 24.(월) 예정

6. 지원금 교부 및 신청

- 지원금 교부신청: 프로그램 결과 발표 후 2주일 이내
- 검토내용
 - 지원요건에 따른 최종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 지원사업 전용 계좌 확인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1부, 계좌 및 연결 체크카드 사본 1부

7. 프로그램 운영

- 일 정: 2023. 8.~ 11.
- 장 소: 각 지원 공간 내

■ 대 상: 화성시민

■ 내 용

시 기	세부내용
프로그램 전	세부 프로그램 운영사항 검토 참여자 모집, 운영 공간 정비, 프로그램 준비, 홍보 등 협조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 사진 및 영상 촬영(아카이빙) (가칭)잇-다 DAY' 각 공간에서 동시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분석

8. 정산 및 평가

■ 정산

- 정산기간: 2023년 12월 4일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 시 화성시문화재단 내 규정(규칙) 준용
- 정산방법: **1차 회계법인 검토** > 2차 담당부서 확인 > 정산서 원본 제출 > 잔액 반납

■ 평가 및 환류

구 분	내 용
현장평가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자료제출	성과보고서,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성과 관련자료 의무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자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자체 평가 실시
최종보고회	최종사업 평가 시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평가 환류 공유

9. 기타

■ 지원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 또는 단체
- 지원신청자 서약서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 종교기관, 언론사(소속단체 포함), 학교 등 이들 기관 소속 및 운영 단체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조직
- 지역축제 등의 부속행사로 계획된 사업
- 이전 지원 사업 운영 시 지원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관계법령 규정 위반, 정산서 미제출, 지원금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항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단체 선정 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 절차)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 지원신청 시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
-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하며, 지원자 신뢰 신청 및 심의진행을 위한 확인서 날인 진행
- 선정 결정 후 자격미달, 지원불가 대상 판명, 임의로 사업을 포기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지원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기타 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지원 변경

- 사업 선정 이후 교부신청서를 기준으로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구 분	변경항목	조치사항
사업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제외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예산	예산 운영이 당초계획과 상당부분 다를 경우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특수한 경우 예외 인정	지원금 삭감 및 취소 가능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 횟수 50% 초과 축소	지원금 삭감 및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특수한 경우 예외 인정	지원금 취소 및 이듬해 사업 신청시 불이익

■ **지원금 전용 통장 의무 사용**

- 지원서 내 대표자 명의 통장만 사용 가능
- 기존 보유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조정된 경우 사용 가능
- 정산이 종료될 시점까지 지원금 예산 외 다른 입출금은 불가
- 정확한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없이 현금 인출 사용 불가
- 재단 요청이 있을 시 통장 표지에 지원년도, 사업명, 신청인(단체)을 기재하여 제출
 -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필수
 - 사업 종료 후 잔액 및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및 잔액 전액 반납 및 수수료 지원자 부담

■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 031-290-4666**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예산편성 참고사항			
구분	적용 내용 및 기준금액	집행방법	
지원가능항목	기획비	- 주 행정인력 및 프로젝트 기획비 · 최대 30만원 편성 가능	계좌이체/ 원천세 신고
	사례비	- 프로젝트 관련 공연비, 강사비 등 개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 강사비 기준: 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기준 준용 · 상근인력 강사비 집행불가 · 사례비는 전체 예산의 40% 이하 편성 ※ 예술인고용보험 대상시,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 책정(0.8%)	
	제작비	-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 업체제 제작 의뢰한 비용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홍보비	-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인쇄, 디자인 등 비용	
	재료비	- 소품, 도구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재료 비용 ·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구입 불가 · 해당 사업용이 아닌 일반물품 구입 불가	
	임차비	- 사업 진행을 위해 각종 장비, 물품(음향, 조명기기)등에 대한 임차료	
	기타운영비	- 상위 예산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용 · 행사보험료, 수수료 등 기타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 예술인고용보험 대상시, 사업주부담분의 보험료 책정(0.8%)	
지원불가항목	일반용역비	- 대행용역비(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등	
	공공요금	-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등	
	통신요금	-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자산취득비	- 사업장 운영의 평상시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한 상설 기자재 등의 구입비	
	경상운영비	- 위 항목 이외에도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사무실 운영경비, 급여 등)	
	기타	- 상품권 구입 및 상금 형태 지출 - 행사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회의 식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친족 간 거래, 공간운영자 혹은 문화활동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와의 거래	
예산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필수 - 프로젝트 관련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의무 - 회계법인 검토 비용 필수 청구		

※ 위 참고표에 준하여 산출하되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 사용 제한업종]

구분	적용 내용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